

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

● 사업목적

산재근로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지원하여 **산재근로자 복지향상도모**

● 지원대상

아래 대상자 중 월평균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

- 유족급여 수급권자,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, 장애등급 제1급~제9급 판정자, 산재 창업지원 결정자(‘사업자금’ 한정),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(CS2),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 (의료비·혼례비·장례비에 한정)

● 지원내용

세대당 **2,000만원** 한도

- 의료비, 혼례비, 장례비, 취업안정자금 : 각 **1,000만원** 이내
- 주택이전비, 차량구입비, 사업자금 : 각 **1,500만원** 이내

● 이자율 및 상환방법

연리 2%, 거치기간 1~3년, 상환기간 2~4년 중 선택

● 대상자 선정방식

- 의료비·혼례비·장례비·취업안정자금·사업자금·주택이전비 : 수시접수
- 차량구입비 : 월 2회 선발(재원사정에 따라 변동)
※ 용자재원 부족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정

● 사업추진체계

용자신청 (해당자)



적격자 심사 및 선정
(근로복지공단)



근로자신용보증제
연계 (근로복지공단)



대출 및 원리금·이자
납부 (금융기관)

● 지원문의

-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: 1588-0075
-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: www.kcornwel.or.kr